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 동 길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강 동 길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6일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발의 취지와 내용을 말씀 드리면,

서울시는 해체공사감리자 명부를 매년 공고를 통해 작성·관리하고 있으나, 신청자의 대부분이 기존 감리업체로서 신청 내용에도 큰 변동이 없어 반복적인 신청으로 인한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재된 인원 대비 연간 실제 감리 수요 건수가 적어, 상당수가 업무 배정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를 개선하고자 모집공고 주기를 현행 매년 1회 이상에서 2년에 1회 이상으로 조정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회의 균등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 드린 원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